

## 신규사업자가 알아야할 사항



### 사업자가 내야 할 세금의 종류는?

사업자의 성격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는 다릅니다.

사업자가 내야 되는 세금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 가치세와 사업을 해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내는 소득세(법인인 경우와 법인이 아닌 경우로 크게 구분됩니다.)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아니합니다.

- 곡물, 과일, 채소, 육류, 생선 등 미가공식품 판매
- 연탄, 무연탄, 담배, 복권 판매
- 도서, 신문, 잡지 발간
- 허가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 교육용 역업

다음 사업을 하는 납세자는 특별소비세를 별도로 내야 합니다.

- 카바레, 나이트클럽, 요정 및 이와 비슷한 성격의 싸롱, 카페, 디스코 클럽 등 과세유 흥장소
- 귀금속상, 투전기(슬롯머신 설치 오락장), 가구제조업 등

사업을 해서 번돈, 즉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업자는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그러나 소득세는 여러가지 공제제도가 있어 영세사업자는 이런 공제금액을 빼고 나면 과세될 소득이 없어 소득세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업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내야 됩니다.

###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얼마나 내나?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 즉 물건을 사다가 파는 과정에서 부가된 가치(이윤)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사업자는 물건값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팔기 때문에 실제세금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잠시 보관했다가 국가에 내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금을 실지로 부담하는 사람과 납세의무자가 다른 세금을 간접세라 함)
- 모든 사업자가 똑같은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일반과세자와 과세특례자로 구분하여 세금의 납부절차와 세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 일정규모 이하의 영세한 개인사업에 대하여는 기장능력 부족 등을 고려하여 좀더 간편한 방법으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과세특례제도를 두고 있다. 이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를 과세특례자라 하고, 과세특례자가 아닌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라 합니다.
-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3,600만원(대리중개, 주선,

위탁매매, 도급은 900만원)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는 사업자등록신청서의 과세특례적용신고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거나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내셔야 과세특례적용을 받게 됩니다.

### 과세특례자의 차이점

- 세액 계산 : 일반과세자 : 매출액의 10% - 매입시 부담한 세액
- 과세특례자 : 매출액의 2% (대리, 중개, 주선, 위탁매매) 도급은 3.5%
- 신고·납부 : 일반과세자 : 1년에 4번 신고납부
- 1.1~1.25, 7.1~7.25 : 확정신고
- 4.1~4.25, 10.1~10.25 : 예정신고
- 과세특례자 : 1년에 2번은 확정신고 납부하고 2번의 예정신고는 관할 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 발부
- 기장의무 등 :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하며, 과세특례자 :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주고받은 (간이)세금계산서만 보관하면 기장하는 것으로 봄